

「서울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

“우리의 노동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도와주세요!!

- ✓ 나를 스스로 보호하며 일하는 법
- ✓ 제도적으로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공

정

ABCD
E...

ABC



서울시가 알려 드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서

“우리의 노동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

2025. 1.

CONTENTS



우리는 누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 01 다양한 직종, 유연한 고용, 11
급변하기 쉬운 노동 시장
- 02 들어 보아요, 서울 지역 프리랜서들의 이야기..... 12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 노동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2부

모두 다른 노동 환경, 권리와 이익은 이렇게 보호하세요.

- 1. 공정 계약 : 정확한 주고받기, 16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 2. 인격권 : 존중받고 존중하고, 28
일할 때의 기본 권리
- 3. 안전 보건 : 모두의 일터는 39
안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 4. 사회 보험 : 다양해진 사회 보장 제도, 51
백 퍼센트 활용하기
- 5. 저작권 :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창작자 권리 59
- 6. 세무 : 똑똑한 비용 처리로 내 지갑을 두둑하게 69

부록

권리 구제 기관, 여기에 있습니다.

세부목차

1부

우리는 누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10

01 다양한 직종, 유연한 고용, 급변하기 쉬운 노동 시장 11

02 들어 보아요, 서울 지역 프리랜서들의 이야기 12

(1) 서울 지역 프리랜서 설문 조사의 결과가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 12

(2) 어떻게 일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13

2부

모두 다른 노동 환경, 권리와 이익은 이렇게 보호하세요. 15

PART1. 공정 계약: 정확한 주고받기,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16

(1) “계약은 노동과 보수를 주고받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16

(2)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17

①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자: “필수 확인 항목” 17

② 최소한 이것만은 피하자: “독소 조항” 20

(3) 그것이 알고 싶다, 계약 관련 Q&A 22

PART2. 인격권: ‘존중받고 존중하고’, 일할 때의 기본 권리 28

(1)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28

(2) 인격권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익혀 둡시다. 29

① 폭언, 갑질, 성희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당연한 권리입니다. 29

②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32

(3) 그것이 알고 싶다, 인격권 관련 Q&A 36

PART3. 안전 보건: 모두의 일터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39

(1) “일터에서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39

(2)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예방 먼저 40

① 산업별·직종별 유해·위험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0

② 산업 분야별 사고, 질병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42

(3) 그것이 알고 싶다, 안전과 보건 관련 Q&A 47

PART4. 사회 보험 : 다양해진 사회 보장 제도, 백 퍼센트 활용하기	51
(1) “확대되는 사회 보장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51
(2)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52
① 산재보험이란	52
② 고용 보험이란	54
(3)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 보험 관련 Q&A	56
PART5. 저작권 :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창작자 권리	59
(1) “창작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알맞게 설정하기”	59
(2)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하나, 둘, 셋	60
①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자 : “저작물 이용 허락과 저작권 양도할 때 필수 확인 항목”	60
② “일시불,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62
(3)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권 관련 Q&A	62
PART6. 세무 : 똑똑한 비용 처리로 내 지갑을 두둑하게	69
(1) “똑똑한 비용 처리로 실질소득 늘리기”	69
(2) 세무 관련해서 꼭 확인하세요.	70
①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70
② 필요 경비의 개념 및 항목들입니다.	70
③ 적격 증빙 자료를 챙겨 두세요.	74
(3) 그것이 알고 싶다, 비용 처리 관련 Q&A	75
부록 권리 구제 기관, 여기에 있습니다.	78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이 만들어가는 세상

나의 일과 나를 보호해요!
「권익보호지침」이
요점 정리한 6개의 열쇠!



공정 계약



**정확한 주고받기,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 쓸 때 알아 둘
필수 항목, 독소 조항
확인 방법 알려 드려요.

인격권



**존중받고 존중하고,
일할 때의 기본 권리!**

폭언, 성희롱,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에서
나를 지켜요.

안전 보건



**모두의 일터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일터의 유해 위험 요인,
안전 보건 점검은
이렇게 합니다.

사회 보험



**다양해진 사회 보장 제도,
백 퍼센트 활용하기!**

확대된 사회 보장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작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창작자 권리!**

저작권 계약할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



**똑똑한 비용 처리로
내 지갑을 두둑하게!**

소득신고 아무지게,
비용 처리 똑똑하게!

들어가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도만큼 우리의 노동의 성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임금노동자와 다르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현재 기존의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차별 없이 보호받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익보호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사항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 방법들입니다. 상호존중하는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인격에 관한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다양해진 사회보장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저작권을 관리하는 일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사례와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러한 자구적인 보호 방안들이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 스스로 보호받음으로써 한층 더 나은 일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선언적인 지침이나 노동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 등은 입법의 과제로 두더라도, 노동 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현행법상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지침이 새로운 노동 형태로 생활하고 일하는 서울시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고,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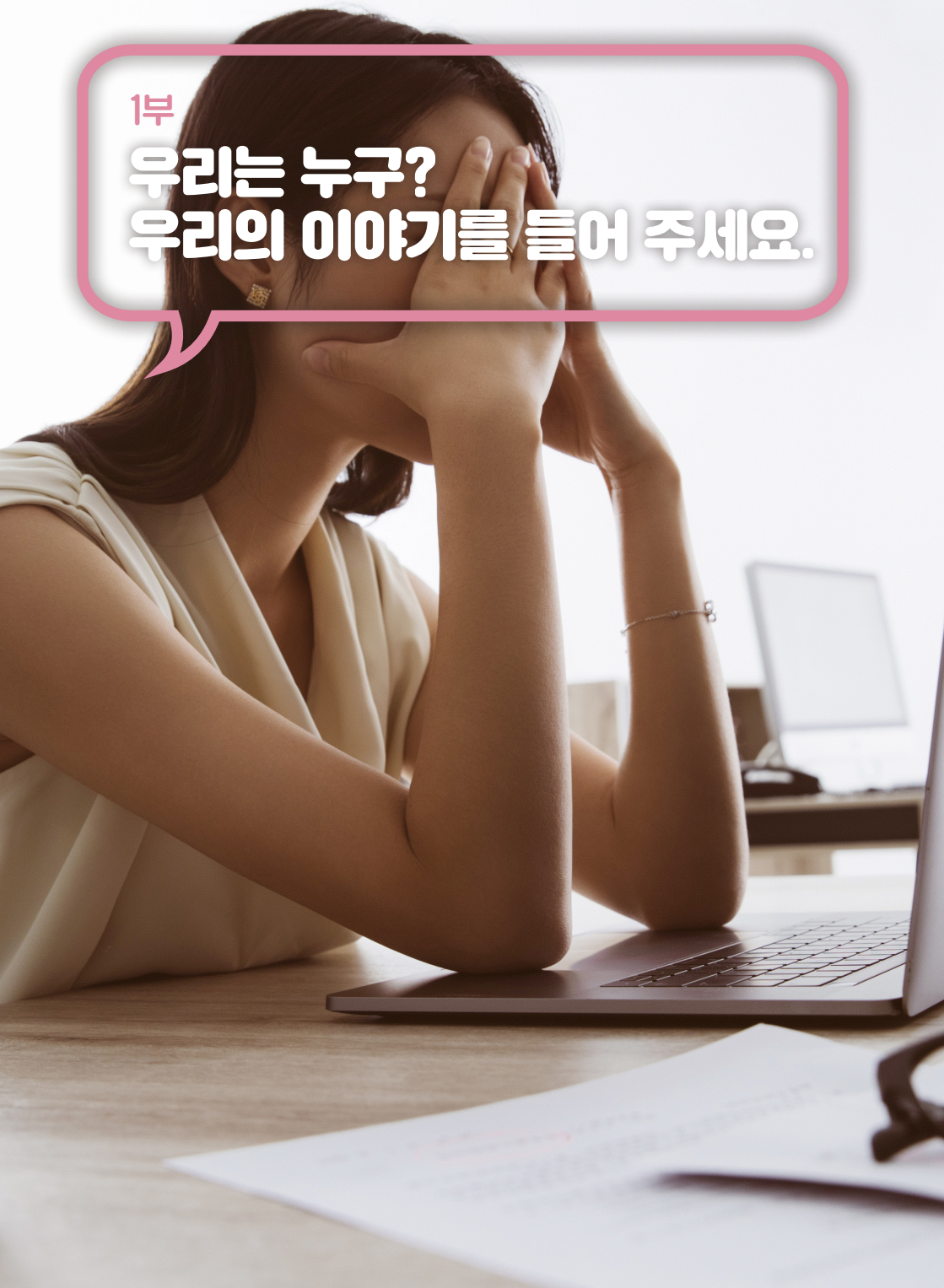
2025. 1.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1부

우리는 누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01

다양한 직종, 유연한 고용, 급변하기 쉬운 노동 시장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근로관계 아닌 새로운 계약 형태인 **자유계약 기반의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예시) 모델, 내일아티스트, CS강사, 통·번역가, 여행가이드, 웹툰·웹소설작가, 보조작가, 운동트레이너 등



플랫폼노동자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에 놓인 사람¹
예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관리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개별 사업주 또는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령 또는 고용 보험법에 따른 직종²에 해당하는 사람
예시)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개발자,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이처럼 새로운 노동 형태의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제외되어 불공정행위 등 여러 문제에 노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법의 적용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조건, 노동인권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적 보호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 1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2020년 22만명, 2021년 66만명, 2022년 79.5만명, 2023년 88.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 2 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배송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 학교교사, 관광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등

02

들어 보아요, 서울 지역 프리랜서들의 이야기

(1) 서울 지역 프리랜서 설문 조사 결과가 들려주는 이야기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24. 8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 525명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 각 산업별 응답 인원은 여가 산업 100명(19%), 교육서비스 산업 110명(21%), 뉴미디어 산업 100명(19%), IT 산업 114명(22%), 개인 서비스업 101명(19%)입니다.

<표1>

산업분야	실태 조사 세부 직종
여가 산업	여행/등산가이드, 여행상품개발자, 큐레이터, 레저스포츠 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교육 서비스 산업	CS강사, 방송강사, 학원강사, 스피치강사, 전화영어(레슨) 강사, 유아체육강사 등
뉴미디어 산업	스토리보드 작가, 웹툰/웹소설 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팟캐스터 등
IT 산업	앱(모바일 명함) 입력자, UX/UI 디자이너, 모바일앱 개발자, 게임 개발자 등
개인 서비스업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미용사, 웨딩플래너, 마사지사, 헤어디자이너, 장의사, 간병인 등

- 전체 525명(100%) 중 395명, 무려 75.2%가 불공정한 행위를 경험하였으며, 업무시 다른 추가의 과업을 강요당하거나 불명확한 업무 행위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침해와 폭언 및 모욕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 다른 안전 보건을 침해당하는 상황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그 외에도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은 불공정 계약, 대금 지급 지연, 일방적 계약 해지, 소득 불안정, 낮은 단가, 장시간 노동, 휴일 노동, 괴롭힘·성희롱, 저작권 침해, 안전사고, 사회 보험제도 미적용, 세무 처리 시 소득 증빙의 어려움, 경력 개발 지원 부족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은 일감 확보와 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어떻게 일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 우리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들의 현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본 지침을 통해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가 겪는 취약한 6개 영역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노동 관계법령이 적용이 되지않더라도, 현재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 개별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호 권리 (계약, 인격권, 안전 보건, 사회 보험, 저작권, ▲세무) 법적 근거 등을 통해 자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표2>

구분	선정 영역	현행 적용 가능한 법령
1	계약	민법, 공정거래법 등
2	인격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3	안전 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등
4	사회 보험	고용 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	저작권	저작권법 등
6	세무	소득세법 등

- 서울시 권익보호지침이 다양한 노동 형태로 근무하는 서울시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표3>

계약·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소 조항,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부당한 권리침해 예방 • 용역 대금, 저작권 등 적절한 권리설정을 통한 부당한 소득 저하 방지 	
인격·안전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 생명·신체의 자유 기본권 보호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일의 만족도 증가 	
세무·사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 인식 및 세무 처리 편의 제고 • 구체적 비용 처리 기준 제시 통해 실질소득 제고 • 가입 가능 사회 보험제도 활용 통한 사회보장 혜택 향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노무제공자	<p>“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보호받는 사회”</p> <p>“부당한 권리침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구성원”</p>
기업(업체)	<p>“공정 계약, 노동인권 존중의 ESG 경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p> <p>“노동분쟁 비용 감소로 생산성을 도모하는 기업”</p>
고객	<p>“보다 좋은 품질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p>



2부

모두 다른 노동 환경, 권리와
이익은 이렇게 보호하세요.



PART.1 공정 계약: 정확한 주고받기,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1) “계약은 노동과 보수를 주고받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 계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을 명확히 체결하지 못해 추가 과업을 강요받거나 보수의 지급이 지연되고 미지급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은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불공정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보호받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지침에서는 프리랜서들이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 항목들과 꼭 피해야 할 독소 조항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조건을 확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 ‘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문서, 서면이 아닌 말, 구두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분쟁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①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자: “필수 확인 항목”

-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내용 및 범위, 결과물의 기준,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과업완수일, 검수 절차, 수정 횟수, 용역 대금(보수), 용역 대금(보수) 지급일(기한), 계약 해지사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으로, 최소한 이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4>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항목		
1	계약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는 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발주처(고객) <회사(법인)>인 경우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두도록 합니다.
2	계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제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 까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웹툰작가 - 'A작품'에 대해 월 제작화수 4화, 총 제작화수 36화, 컷수 70컷 이상, 제작기간 2024. 1. 1. ~ 2024. 6. 30.까지</p> </div>

4	결과물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물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객관적,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창작물의 경우 수정 횟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검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설정합니다. <p>▶ 예시: 디자이너 - 초안에 대해 총 3회 수정가능, 초과시 추가비용 회당 00,000원 지급 또는 초과 수정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p>
5	계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맡겨진 용역업무에 대해 완료하여야 하는 날을 확인합니다.
6	용역 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금액과 지급기일 및 지급기한(지연시 이율) 등을 확인합니다.
7	계약해제, 해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에 대해서만 규정된 것이 아닌지, 적어도 쌍방에게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p>▶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손해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방법, 한도, 위약금 등에 대해 설정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할 때 꿀팁! TIP, TIP, TIP!



계약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모호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그 뜻을 물어보고, 다소 투박하더라도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고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가 불공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나(프리랜서)와 상대방(발주처)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발주처에게는 허용된 권한 또는 권리가 나에게 없다면 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쓰는 계약서’, ‘우리 업계의 일반 계약서’라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가 될 때는 계약서 문구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렵고 막연하다면, 인터넷에서 똑같은 이름의 계약서를 찾아서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계약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많습니다. 가급적 그런 자문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주처에만 권한이 인정되고 프리랜서에게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불평등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처는 시정을 요구하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의 계약 위반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발주처의 지나친 재량을 인정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계약 결과물(납품물)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발주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추가 대가도 받지 못하고 끝도 없이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결과물을 납품하는 경우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칫 사용료 정도의 적은 대가만 받고 나의 소중한 재산을 영구히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나의 결과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차후 매출이 생기면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항목이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매출이 커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서 다 빼고 나면, 정산금이 극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전속계약 같은 것입니다.



● **위약금 또는 위약벌 관련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과다한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런 위약금이 프리랜서에게만 규정된 경우도 문제입니다. 법원에 가면 예외적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약금, 위약벌 조항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위반의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조항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 (참조)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2023. 12.) 중 공정거래 관련 규정

제00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00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00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노무제공자별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①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예: 건설기계기사)



② **(판매목표 강제)** 특고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과도한 회원유치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학습지교사)



③ **(판매목표 강제)**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 기간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예: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④ **(판매목표 강제)**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 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운전기사)



⑤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노무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무제공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예: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⑥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예: 택배기사, 쿠팡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



⑦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공통)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시행 2023. 7.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7호, 2023. 7. 1., 제정]



⑧ (기타 불이익 제공)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비나 구독료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교사)



⑨ (기타 불이익 제공) 대리운전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배차 취소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예: 대리운전기사)



⑩ (기타 불이익 제공)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예: 대리운전기사)

[3] 그것이 알고 싶다, 계약 관련 Q&A



Q1 발주처로부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계약은 불요식계약(계약체결에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이 원칙입니다. 도급·용역계약 등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개별 법령에서 계약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발주처 측에 계약서 작성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계약으로 합의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추후 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시행 2023. 7.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7호, 2023. 7. 1., 제정]

간단하게 A4 1장에 정리를 하고 양자가 서명날인을 하거나, 미팅 후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내서 확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추후 합의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표5>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개별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법	하도급거래법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서비스기관이 소속 돌봄 노동자와 계약하는 경우



Q2 어떤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 내용인가요?

A2 일반적으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일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의 내용을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 내용 유형으로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등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당·불공정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약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추후 분쟁에서 부당함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지침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 예시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발주업체에서 용역 대금(보수)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발주업체 측에서 요청한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한 대금 지급기일 내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법상 지연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상의 결과물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대금 지급에 관하여 업체측에 요구하되,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소송(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권리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게요?

A4 당사자 간 사전에 정한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상대방에게 발생했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하여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서상 계약 위반시 상당히 큰 금액의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위반하면 정말 이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건가요?

A5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는 않지만(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부당히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 또한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판결상 감액 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위약금 또는 위약벌 약정이 설정되었는지를 먼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내용의 삭제 또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6 문화예술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받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저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내용인지 판단하기 막연합니다. 제가 참고할만한 방법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A6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의 '표준계약서 보급' 페이지를 찾아보면 현재 발표된 약 80종의 표준계약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혹시 같은 이름의 계약서나 유사한 계약서가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표준계약서가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계약서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같은 계약서나 유사한 계약서를 검색해서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서와 양자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 이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여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의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오랜 기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계약서라면 다소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7 발주처가 저에게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은 위법한 계약서, 부당한 계약서 아닌가요?

A6 표준계약서는 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들어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대체로 사업자보다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내용이 많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5조 참조). 취지는 그렇지만, 표준계약서 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위법한 계약서라거나 무효인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술인복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지원(지원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지원 등을 받았다면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표6> ※ (참고) 계약 관련 용어 알아보기

구분		내용
1	계약	• 사업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2	당사자	•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법인, 개인, 단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	• 계속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시점을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의 해제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과거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5	귀책사유	• 계약위반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합니다.
6	손해배상책임	•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채무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불법행위)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7	위약금	•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위약벌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방의 계약 이행 가능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배상 이외에 설정한 금전적 페널티를 의미합니다.
9	계약의 무효	•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10	계약의 취소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이 있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불가항력	• 계약 당사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사유 또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12	관할법원	•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PART.2 인격권: ‘존중받고 존중하고’, 일할 때의 기본 권리

(1)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격 보호에 있어 제한적인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를 포함 서울시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명, 신체, 명예, 초상, 성명,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 이에 서울시의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주로 겪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사례로서 **폭언, 갑질, 성희롱,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땅한 인격 보호를 위한 자구 방안과 대응할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자 합니다.

[2] 인격권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익혀 둡니다.

① 폭언, 갑질, 성희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가. 폭언, 갑질,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 ‘**폭언**’이란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고객, 발주처로부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7>

구분	예시	
폭언·모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 업무능력에 대하여 근거없이 공개적으로 조롱·비난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모님을 욕하는 행위 등 	
갑질·부당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인 요구에 응해줄 경우 본인 권한으로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고 하는 것 • 업무와 관계없이 특정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기가 좋다며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 • PC모니터를 함께 보며 뒤에서 감싸안은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나 신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성적 경험, 이성관계 등을 캐묻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행위 •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 • 외설적 농담을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등

나. 악성 고객은 이렇게, 대응 요령을 익혀주세요.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는 폭언, 갑질, 성희롱 등과 같은 유형의 고객 또는 발주처와의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문제상황이 발생할 때의 대응 요령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는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도 효과적입니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 직종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 상황을 메뉴얼화 하면 좋습니다. 산업·유형별 문제상황 및 대응방안을 살펴봅시다.

<표8> 고객 문제 상황 예시

구분	내용
여가 산업	• 무대 공연자, 연주자에 대한 성희롱 • 스포츠 활동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교육서비스	• 교육강사에 대한 외모평가 • 학원강사에게 데이트 하자며 사적 만남 요구, 스토킹 등
뉴미디어	• 작품(성과품)에 대한 근거 없는 조롱·비하 등
IT 산업	• 과업 요청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폭언·욕설 등
개인서비스	•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에게 사적 용무를 시키는 행위 • 피부·신체관리 종사자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하는 행위 등

고객 갈등상황 유형별 대응방안

구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법률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
정의	고객 등의 행위가 법률상 범위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 가능	고객 등의 행위가 즉시 법률상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악성민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형	① 성희롱 ② 폭행, 폭언(욕설·협박·모욕) ③ 공포심·불안감 유발 ④ 허위 불만제기 등 업무방해 ⑤ 장난전화	①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제기 ②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생활고 하소연 ③ 자기주장이나 동일 내용을 고질적으로 반복하여 문제 제기 ④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⑤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무리한 요구

▶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1단계] 자제 요청 및 즉시 경고

- 폭언(고성, 욕설, 헐박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혼자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2단계] 녹음 사전 고지 및 법규 위반 공지

- 폭언·성희롱 등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 고지 후 녹음기기(스마트폰 등)로 대화내용을 녹음한다.
- 폭언·성희롱 등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을 고지한다.

[3단계] 상담 종료, 발주처에 상황 공유, 협조 요청

- 폭언 중지 안내를 3회 이상 안내함에도 폭언을 지속할 경우,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 발주업체 등 유관 업체측에 문제상황 경위 및 용역 수행(노무제공) 중단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법률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

[1단계] 자제 요청

정중한 어조로 자제를 요청한다.

[2단계] 업무 기준 설명

-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설명한다.

[3단계] 응대 종료, 유관 기관으로의 연결, 후속 조치 검토

응대를 종료하고, 용역수행 관련 발주업체 측에 고객을 연결하여 관련 보상, 컴플레인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관련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한다.

고객의 요구사항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법률상담 등을 통해 조치·대응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 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유관 단체·협회 등에서 발간 배포한 고객 응대 매뉴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9>

감정노동 종사자 고객응대 관련 참고자료		
고용노동부&안전 보건공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고용노동부&안전 보건공단	<방문직종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10종 안내>	
서울시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안전한 감정노동 일터를 위한 감정노동 사례집 Q&A>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안심일터가이드>	

②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나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 제공 될 때에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⁵

5 • 개인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나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에 따라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②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③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⁶에 대하여는 엄격히 수집하여야 함.

- 또한, 개인이 인격적 존재로서 사적(私的)인 사항에 대하여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녹음되는 일, 개인의 연락처, 학력 정보, 가족관계, 소득수준, 건강정보, 위치정보(GPS기록) 등이 동의 없이 수집 이용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명백한 불법촬영, 노동감시, 사생활 침해로서 인격권 침해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내용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무 제공에 있어 업체 등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범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개인정보 미제공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 이와 같은 항목들은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동의서상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명확한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6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

당사에서는 귀하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목적	보유 이용기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계좌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식별 • 용역계약 체결 및 비용지급 •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용역 계약일부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보존기간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계약 체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목적	보유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원천세 처리 및 신고 	용역 계약일부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보존기간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계약 체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목적	제공받는지	보유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계좌정보 등	회계, 세무 처리	OOOO 회계법인	용역 계약일부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보존기간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계약 체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 항목 체크하기

1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들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공되는지 파악한다.
2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확인한다.
4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고, 누구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5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공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관련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수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계약 내용 상 초상권 등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 직업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얼굴 등이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주업체 측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상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에 대한 장치 마련이 됩니다.
- 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공연 실연자, 모델, 강사 등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초상에 관하여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는 **△촬영물 등에 관한 사용기간, △공개 또는 제공 범위, △상업화 사용여부, △수정 사용여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으로도 나의 초상권에 관하여 업체와 사전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모델 계약

- **(작업결과물 이용 범위)** 업체는 모델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프로젝트관련 포스터,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모바일기기 등
 - 인터넷 및 SNS 등의 매체
 - 게시 대상 웹사이트 URL 주소: https://_____
 - 게시 대상 SNS 매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이용기간)** 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작업 이후 ○년 동안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초상권)** 업체는 모델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성명,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업체는 작업 결과물을 협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모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것이 알고 싶다, 인격권 관련 Q&A



Q1 고객으로부터 폭언, 모욕을 들었을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1 고객이나 거래업체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언의 내용이나 양상에 따라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가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그 직에 대한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용자책임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Q2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2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혼자서 직접 소송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산하에 존재하는 산하기관을 통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의료상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정명령 등의 구제 조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록 권리 구제 기관 참조



Q3 저는 프리랜서 모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

A3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 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권리침해심의를 신청하시거나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하여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촬영계약에서 해당 사진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Q4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업체에 제공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구제 방안이 없나요?

A4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12>

개인정보 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PART.3 안전 보건: 모두의 일터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1) “일터에서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 근로자들은 산업안전 보건법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의 경우 그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의 일터에도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 대책을 마련·이행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와 산재 예방의 시작점인 유해·위험 요인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역시 생명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익 보호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먼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가 일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인식하여 자기 스스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과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과 연관되어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2)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예방 먼저

- ‘유해·위험 요인’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기계, 장비, 물질, 운송 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방식,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됩니다.

① 산업별·직종별 유해·위험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13> 산업별 유해·위험 요인 사례

구분	유해·위험 요인
여가 산업 (문화·예술·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자) 무대 공연시설 추락, 구조물 결함에 의한 끼임, 음향장비 등에 의한 감전 위험 •(공연스텝) 조명 장비, 전기 시설 등 감전 위험 등 •(스포츠트레이너) 장비불량, 중량물 낙하 위험 등
교육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중 대면에 따른 전염성 질병 감염 위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뉴미디어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PC작업에 따른 신체부담 •휴식 부족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
IT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PC작업에 따른 신체부담 •장시간 노동, 과로
개인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어디자이너) 드라이기,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감전·화상 위험, 염색약 등 화학약품 등 •(애견미용사) 가위 등에 의한 베임, 찢림 사고, 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위험 등 •(간병인) 이동식 침대 위험, 휠체어 등 부딪힘 사고 위험, 환자 분비물 등에 의한 감염 위험 등

<표14> 노무제공자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례

구분	유해·위험 요인
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방문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고객 불만, 갈등, 실적 스트레스
건설기계운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재 하역, 운반 중 부딪힘, 끼임 •기계장비결함으로 인한 부딪힘, 끼임 등
방문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거운 교재를 들고 이동(중량물) •이동 중 교통사고 위험
골프장 캐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는 사고 위험 •야외 벌레 물림 사고 위험 •카트에 의한 낙상사고 위험 등
택배배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량물 취급, 신체부담 반복작업
퀵서비스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토바이 운전 이동 시 교통사고 위험 등
대리운전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운전 이동 시 교통사고 위험 등
대여제품방문점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거주지 이동 시 교통사고 위험 등
가전제품수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작업 시 추락 위험 •전동공구 등 사용시 발생하는 베임, 찔림, 감전사고 위험 등
소프트웨어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PC작업 •장시간 노동, 과로
방과후학교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 등

② 산업 분야별 사고, 질병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

가. 공연분야 (연주자, 뮤지컬배우, 댄서, 공연스텝 등)

<표15>

순번	점검내용	YES	NO
1	• 무대 바닥의 전도(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다침)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2	• 설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떨어질(낙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3	• 높은 곳에서의 추락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4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시설 보관 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한다.		
5	• 좌석 및 통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장애물을 제거한다.		
6	• 공연 또는 작업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7	• 야외 공연 또는 작업시 방한용품 등을 준비한다.		
8	• 비상 출구 및 피난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고 확인한다.		
9	• 조명, 음향 및 기타 기술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한다.		
10	• 공연장 내부의 적절한 환기 및 온도를 유지한다.		
11	• 공연 장비, 비품 등의 사용 후에는 질서정연하게 정리한다.		
12	• 공연장 내부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13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14	• 행사장 내외 제공되는 안내물(유인물, 배너, 표지판, 포스터 등)은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제작하여 부착한다.		
15	• 위험구역이나 물품에 대한 접근 제한, 주의 등을 안내한 자료나 설치물을 확인한다.		

나. 스포츠 분야 (스포츠 강사 등)

<표16>

순번	점검내용	YES	NO
1	•활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2	•활동 전 건강 상태(피로, 혈압 등)를 체크한다.		
3	•사용하는 장비, 기구, 운동 머신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한다.		
4	•활동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및 활동복, 안전복을 착용한다.		
5	•작업장 내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물품에 대한 안내표시(취급품의 무게, 무게 중심)를 확인한다.		
6	•바닥면의 안전성(충격흡수) 여부를 확인한다.		
7	•업무 장소에서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8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물품(차단봉, 유도봉, 무전기 등)을 충분히 보유한다.		
9	•야외 스포츠 활동 시 활동 규모와 종목 특성에 적합한 응급 구조, 구급 용품 등을 보유한다.		
10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사람을 들어올리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무게 제한을 두고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11	•고객에게 인격 무시, 욕설,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한다.		
12	•수상 스포츠, 레저 활동 시 활동 장소(바다, 강, 산 등)의 위험요소(깊이, 조류, 파도 등)를 확인한다.		
13	•야외 활동 시 기상 상태와 일기예보를 사전에 파악한다.		
14	•야외 활동 시 활동 코스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다. 뉴미디어 및 IT 분야 (웹툰작가, 유튜브편집자, IT 개발자 등)

<표17>

순번	점검내용	YES	NO
1	•업무 장소는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가 양호하다.		
2	•전류 등의 접촉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피복 상태 양호 등)가 되어 있다.		
3	•과도한 힘이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4	•영상표시단말기증후군(VDT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채광 또는 깜빡이는 광원 등이 직접 작업자의 시야 내로 들어오지 않게 한다.		
5	•작업 자세는 과하게 숙여지거나 구부정한 상태로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6	•모니터의 높이는 눈높이보다 약간 높도록 받침을 설치한다.		
7	•사무실 내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8	•전자기기, 세단기 등 전기 사무용품 등의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9	•사무기구(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10	•사무실의 어두운 조명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춘다.		
11	•책상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이동 중 책상과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상 재배치로 통로를 확보한다.		
12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13	•사무실 내 장시간 에어컨 및 히터 사용으로 인한 고온 및 저온 환경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온도 · 습도 조절장치를 갖춘다.		
14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시간 또는 적절한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15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한다		

라. 뷰티미용분야 (헤어 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등)

<표18>

순번	점검내용	YES	NO
1	•고객에게 인격 무시, 욕설,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한다.		
2	•근무환경, 조직문화, 손님과의 관계 등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파악과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3	•지속적으로 서서 근무하는 경우, 의자를 비치하여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한다.		
4	•작업장 바닥이나 피부에 유해물질이 묻어있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고 세척한다.		
5	•작업 전후로 창문을 열어 작업장을 환기시킨 후 작업을 한다.		
6	•작업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라텍스 장갑 등)를 착용하고 업무에 임한다.		
7	•가위, 면도칼 등 날카로운 물품은 사용 후 정리함에 넣어두거나 캡을 씌워놓는다.		
8	•작업이 끝난 뒤 노출된 신체부위를 씻어낼 수 있는 전용세제를 준비하여 둔다.		
9	•전열기구의 피복 손상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10	•피부질환, 두통,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11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용기뚜껑을 잘 닫는다.		
12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한다.		
13	•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4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유해 화학물질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15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 유해·위험 요인과 잠재적 사고를 파악하여 위험성을 제거,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종류의 작업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써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로 나누어 절차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 방법이 있습니다.

<표19>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개념과 특징	
개념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작업 절차서상 절차)로 나누고 각 절차별 유해·위험 요인과 잠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
특징	△작업자, 작업, 작업 도구(장비) 및 작업환경 사이의 관계에 집중,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는 도구, △작업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상호간의 의견 교환 가능,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작업절차서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방식을 제공, △신규 작업자에 대한 좋은 훈련 방법, △어떤 종류의 작업에도 적용 가능, △작업 또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 가능

<표20> 작업안전분석 실행 예시 - 배달노동자(오토바이 등)

1단계	2단계	3단계
작업 단계 (Step) 나누기	단계별 유해·위험 요인 찾기	안전한 작업 대책 마련하기
① 운행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 수단 및 장비 정비(관리 및 안전장비 부실, 불량) • 헬멧 안전화 등 안전 장비 미착용 • 과적으로 인한 불균형, 중량물 운송 등 • 부적절한 의복(눈에 잘 띄지 않는 의복, 헬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차 각 부구조 및 기능 이상유무 확인 • 헬멧 등 기본 안전장비 착용 • 시인성 높은 조끼, 배달통 이용
② 가맹점 및 주문자 (배달지) cont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주와의 갈등(지나치게 긴 대기시간 등) •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배송 착오, 연락 안 됨, 오기재 등) • 주류 배달 신분증 요구에 대한 고객의 폭행, 폭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폭언 대응 매뉴얼 구성 • 라이더용 기상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p>③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쁜 기상(폭염, 혹한 등), 비·눈·낙엽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 본인 및 다른 사람의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 운전 • 시간 압박(주어진 시간에 배달) • 신체적 스트레스(오토바이 진동, 앉은 자세로 인한 허리 부담, 하지 근육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배달 경로를 가능한 한 안전한 길로 선정하여 운행 • 기상에 따라 주문 범위를 줄이거나 한시적으로 제한
<p>④ 운전 외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과정에서 넘어짐 혹은 미끄러짐 • 가정 방문 시 반려동물로 인한 위험 •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방수 코팅으로 인한 미끄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관계나 도로 바닥 상태 확인

(3) 그것이 알고 싶다, 안전과 보건 관련 Q&A



Q1 프리랜서에게는 주로 어떤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요?

A1 프리랜서가 종사하는 산업과 직종에 따라 안전사고나 건강상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택배, 쿵,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등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는 전신 피로와 어깨, 목, 팔, 손목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⁷ 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루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인 자료입력 작업을 하거나 하루 총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자세)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임시로 하는 작업인데도 꼭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요?

A2 임시, 수시, 비정형 작업은 더욱 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그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노동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아차사고’는 반복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차사고’를 유발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발굴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한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유해·위험 요인을 알아차리고 주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7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정책(2021)

아차사고와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

아차사고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아차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으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함



Q3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며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사업장 순회 점검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담당자와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 기구, 설비와 작업방법 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은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업자의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내기 위해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느꼈다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등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도 있고(청취조사), 작업절차서·공정흐름도·물질안전 보건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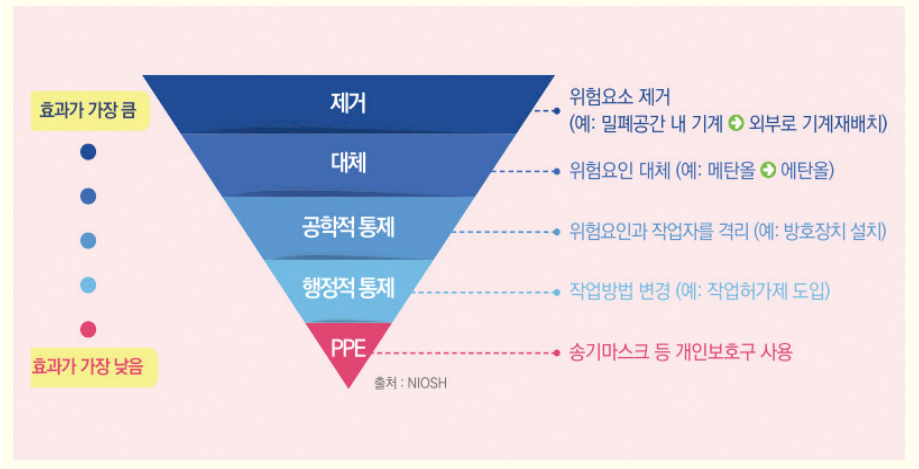


Q4 모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자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요?

A4 사업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모두 발굴했다면 발견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이 가능한 수준인지 즉 위험성 수준을 우선순위를 두고 제거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찾아낸 유해·위험 요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중대재해나 건강장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많은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동종업계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수준을 높게 분류해야 합니다. 이어 이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위험성을 허용이 가능한 수준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 효과성 비교





Q5 프리랜서라서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데, 안전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5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라도 업무 중에 상대방의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대공연 실연자가 무대공연 중 시설물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공연시설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기관, 업체 등에 대하여 고의·과실 여부 등을 따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 보건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6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1월 이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플랫폼 업체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 등은 산업안전 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등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PART.4 사회 보험: 다양해진 사회 보장 제도, 백 퍼센트 활용하기

(1) “확대되는 사회 보장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데에 반해,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역시 실직의 위험,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질병 발병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도 산업재해, 실직의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산재보험법 및 고용 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를 신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직종은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외의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직종은 요건 해당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현행 법령상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의 내용 및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사회 보험’이란 실업,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재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의 적용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① 산재보험이란

가. 산재보험과 가입 대상

- <산재보험>이란, 산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 발생 시 해당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사회 보험을 의미합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종은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쿼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이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 제공 요청을 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대상,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실제 노동에 종사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원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산재보험 수급 혜택을 알아볼까요.

- **(산재보험급여)** 일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표21> 산재보험급여 종류

	구분	내용
1	요양급여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료 등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보수 70% 상당하는 금액
3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5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치유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휴업급여 대신 지급
6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장해급여자(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8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장례비

- **(산재신청방법)** 산재를 신청할 때는 요양급여를 무조건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동의 아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함으로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니거나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해재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ci.kawf.kr/Main.do>)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시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 중 플랫폼배달노동자)** 서울시 마포구(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93)에 주민등록 되었거나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대 10개월 동안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연 최대 10만 원 한도)합니다.

② 고용 보험이란

가. 고용 보험과 가입 대상

● <고용 보험>이란, 근로자 등의 실업 기간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을 의미합니다.



- 고용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대상(단, 연령 및 소득 제한⁸ 있음)으로 해당직종은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의 경우 역시 당연히 적용 대상(단, 연령 및 소득 제한⁹ 있음)입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특정 업종¹⁰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으로(개인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 포함), 고용 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고용 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8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15세 미만 미만자(임의 가입),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자(합산 신청 가능)는 적용 제외

9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15세 미만 미만자(임의 가입), 월 보수액 50만 원 미만자(합산 신청 가능)는 적용 제외

10 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 공사 등은 적용 제외

나. 고용 보험 수급 혜택을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해당 금액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의 경우에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출산일 전후 90일 동안 지급합니다.

<표22>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 보험급여

구분		노무제공자	예술인
가입 대상 (적용제외)		노무제공자 (단, 월평균소득 80만 원 미만자 적용제외, 소득합산 신청 가능)	예술인 (단,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자 적용제외, 소득합산 신청 가능)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노무제공자/사업주 1/2씩 부담)	실업급여 1.6% (예술인/사업주 1/2씩 부담)
실업 급여	수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 금액	이직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출산 전후 급여	수급 요건	출산일(유·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출산일(유·사산일) 직전 또는 출산일(유·사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 금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 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다.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예술인)** 근로복지공단은 월 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에게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go.sbiz.or.kr)은 1-2 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고용 보험료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www.seoulsbdc.or.kr>)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합니다.

[3]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 보험 관련 Q&A



Q1 프리랜서가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방법이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성격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종속관계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일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표23>

구분	내용	비고
고용 보험	노무제공자, 예술인 해당시 가입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해당시 가입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소득 미발생시 해촉증명서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 또는 납부 예외 가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	



Q2 임의가입이란 무슨 뜻인가요?

A2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당연적용’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이란 당연적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회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사회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므로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고, 사회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사회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3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24>

기관명	주요 내용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	노무제공자 산재·고용 보험 가입지원 등	(02)6946-0500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	노무제공자 산재·고용 보험 가입 관련	(국번없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 예술인 가입부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등	(02)6946-0650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사무대행 등	(02)3668-02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격, 보험급여 등	(국번없이) 1577-1000
국민연금공단	가입, 보험급여 수급 등	(국번없이) 1355



Q4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인데 업체에서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사업주 또는 플랫폼 업체 측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자 고용 보험 또는 산재보험 수급 요건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 보험 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 서류, 입증자료 제출 등 복잡해질 수 있어 사전에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1588-0075)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업체에서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적절한지, 얼마를 공제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보험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사업주 또는 플랫폼에 ‘공제계산서’를 요구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징수법’)에서 원천 공제 금액에 대해 공제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8조의2 제5항, 제48조의3 제7항).



Q6 제가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를 통해 자세한 정보 및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PART.5 저작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창작자 권리

(1) “창작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알맞게 설정하기”



- 저작권을 양도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과의 법적인 효과 차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는 경우 나중에 창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창작자가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지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창작하는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때 유념해야 할 저작권법 기본 내용과 저작권을 양도할 때 넘어가는 권리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하나, 둘, 셋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① 저작물 이용 허락과 저작권 양도할 때 필수 확인 항목

- 나의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이용허락의 내용이 담긴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내용에는 **대상저작물(저작물명, 저작자 등 표기),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기간, 지역 범위 등 이용허락을 하거나 양도하는 권리의 내용(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전시 등),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정산방법, 정산주기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도 여전히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은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과 이용 방법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정 기간(3년, 10년 등)이 지나면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돌아온다고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인지, 이용 허락하는 것인지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법적인 효과 면에서 매우 차이가 큽니다. 저작물을 창작자의 ‘집’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저작권 양도계약은 집을 팔아치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용허락 계약은 집을 잠시 빌려주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기간이나 지역 등 범위를 정하여 양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를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양도를 하면, 그 외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 양도계약을 하면 저작권이 계약상대방에 넘어가게 되어, 이제 저작권자는 계약상대방이 됩니다. 기간이나 지역 등을 제한한 저작권 양도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특별한 제한 없이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저작권 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물의 권리자가 계약상대방이 되어 최초 창작자(저작자)도 계약상대방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속편, 후속 시즌, 시퀀, 프리퀀 등 관련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까지 허락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관련 저작물’ 부분은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할 때 이 부분까지 권리를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구름빵 사건’의 경우가 있음)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과 ‘양도 계약’의 모범 양식 비교해 볼까요.

<이용허락 계약>

제0조 (권리자의 의무)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0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비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년 ___월 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양도 계약>

제0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0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허락 계약이나 양도계약이나 당연히 수반하여 대가의 지급 부분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함.

② “일시불,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 저작권 양도는 주로 양수받는 측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이제는 저작권자로서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 입장으로는 너무나 큰 권리를 결정적으로 잃는 셈이 됩니다.
- 이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출판권 설정,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설정하면 상대방도 제3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도 원래 저작권자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 또 하나는 **적절한 기간과 지역 등 범위를 정하여 저작권 양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작권 양도를 하면 양수인도 그 범위에서는 저작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고, 차후 저작권자도 권리 회복을 하게 됩니다.
- **이용허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독점적, 배타적 이용허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사실상 저작권 양도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양도 대가를 반드시 일시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불로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차후 수익분배 방식으로 대가를 받도록 정하면 저작권자도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양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불,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의 문제점이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계약상대방에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3]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권 관련 Q&A



Q1 제가 디자인, 영상 등 작업물의 창작자라는 것을 미리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1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특별한 절차나 형식의 신고 또는 이행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성립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력과 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후적인 입증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비용도 저렴하고, 1회 등록으로 족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심사도 형식심사로 간단하여 등록도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Q2 공동저작물의 권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A2 공동저작자도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의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이때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그 저작물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공동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양도하는 등으로 행사하면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습니다.



Q3 발주처에서는 아이디어나 기획 정도만 하였음에도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A3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작’은 사실행위로서 창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기획안을 제시한 경우, 창작에 조언을 한 것입니다. 힌트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정도로는 ‘창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런 사람이 저작자와 저작물에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했다고 해도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작품에 표시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제로 웹툰 플랫폼 대표자가 웹툰 작가에게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는 정도로 관여하고 자신을 웹툰 작품에 ‘글 작가’라고 표시한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죄 유죄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217 판결. 확정).



Q4 일을 소개시켜 준 지인과 함께 작업을 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차후 이익배분 등 트러블이 없도록 하려면 미리 어떤 것들을 정해두어야 할까요?

A4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공동저작자별 기여분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제48조).

따라서 지인과 같이 창작 작업을 하지만 **업무 범위가 달라 각자 기여분이 명확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 ▲업무범위, ▲저작권의 지분 비율, ▲저작물 이용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저작권의 양도·상속, ▲2차적저작물의 창작과 그에 따른 수익분배 범위,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을 정할 수 있나요?

A5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비독점적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독점적 이용 허락자는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해서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Q6 발주처와 맺은 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창작한 작품을 넘겨 주었습니다. 계약은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만약 약약서를 아예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A6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조 제2호).

즉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자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즉,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양수하는 저작권 양수도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즉, **발주처가 발주를 주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서 발주물의 저작권이 저절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자는 발주물에 대해 발주처에 어떤 권리를 부여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즉,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허락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실 관계상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즉,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저작자(창작자)가 발주처에게 ‘저작물을 사용해도 좋다.’고 이용 허락을 했다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적인 이용허락’으로 볼 수도 있음). 계약에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7 저는 발주처와 계약에 따라 작품을 창작해서 넘겨주면서 대가를 일시불로 받았고, 다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이렇게 일시불로 대가를 받고 작품을 넘겨준 것은 ‘매절계약’이니 저작권은 발주처에 속한다고 합니다. 발주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7 우선 ‘매절’(買切, 팔아치운다는 뜻)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매절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고, 그 자체로는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법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매절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매절 계약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만, 사용료로 받은 대가가 보통의 이용료를 훨씬 넘는 고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6. 1.자 94카합3724 결정). 따라서 발주처가 지급한 대가가 현저히 큰 경우는 발주처 주장대로 양도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용허락 계약 정도로 봅니다.



Q8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 후에라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8 우리 법과 판례상 계약은 체결한 내용 그대로, 즉 계약서 문언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민법상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 지침에서 예시로 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사법적 효력(당사자 간 효력)이 없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기사나 보도를 보면 연예인의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으로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서 보도까지 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음반사 사장에게 저작권 양도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그러합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 등).

따라서 계약은 차후에 효력을 다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체결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다른 사람이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9 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나눠서 살펴봅니다. 제3자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제123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제125조), 명예 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이러한 민사적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제12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또한 이러한 민사적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표25> ※ (참고) 저작권의 종류 용어 알아두기

구분		내용
저작 인격권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 재산권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됨)
	공중송신권	•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됨)
	전시권	•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대여, 대출, 판매,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
	대여권	•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됨)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PART.6 세무: 똑똑한 비용 처리로 내 지갑을 두둑하게

(1) “똑똑한 비용 처리로 실질소득 늘리기”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는 주로 자유계약자로 일하여 유연한 업무환경과 자율성이 있으나, 세금이나 소득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며 소득신고 등 세금을 제외한 수입을 실질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필요 경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발생에는 납세의무가 뒤따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과 달리 프리랜서는 스스로 종합소득 신고 등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신고 방법이나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적절한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 지식수준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고 시 절세 방법, 공제 기준, 각종 서류 및 필요사항 관련 응답 점수가 평균치보다 낮았으며, 공제 요건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의 적절한 세금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 경비 항목과 적격 증빙 자료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세무 관련해서 꼭 확인하세요.

①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프리랜서의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먼저 본인의 소득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 배달원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 받을 때 해당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아두세요.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추가로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② 필요 경비의 개념 및 항목들입니다.

- 필요 경비란 사업을 영위할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사업(기타)소득자들은 본인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만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항목 예시

<표26>

구분	유해·위험 요인
여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가이드의 일정상 숙박비, 기사비용• 요가강사, 레크레이션 강사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산가이드, 수상스키강사의 장비구입비• 헬스트레이너의 PT홍보비, 운동장비 구매비• 골프캐디의 고객영업목적 홍보물품 구입비

교육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강사의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 강사의 수업홍보비, 강의 보조용품 구입비
뉴미디어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보조작가비, 외주용역비 • 유튜브 편집자의 편집장비 구입비, 편집프로그램 구입비 • 방송진행자, 아나운서 등의 의상비, 세미나 관련 지출비용
IT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의 컴퓨터, 개발프로그램 구입비용 • 프로그램 외주개발비
개인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일아티스트의 재료비 • 헤어디자이너의 미용용품 구입비 •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화장품 구입비 • 배달원의 차량유지비, 보험료, 렌탈비용, 수리비

※ 필요 경비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사례로 알아보기

(예시1) 여행가이드(수입금액 2천만 원)가 업무 중 해외 숙박비 5백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 경비 4백만 원에 추가반영 하였다. 이에 일반 경비만 반영하면 냈을 세금 약100만 원을 약6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약38만 원 절세)

(단위: 원)

구분	반영 전	반영 후	비고
총수입 금액	20,000,000	20,000,000	
필요 경비	4,000,000	9,000,000	A+B
일반 경비	4,000,000	4,000,000	A
해외 숙박비		5,000,000	B
소득 금액	16,000,000	11,000,000	
∴			
총부담 세액	1,006,500	627,000	

(예시2) 학원강사(수입금액 3천만 원)가 업무 중 수업홍보비로서 SNS에 광고비를 1천만 원 사용하고 일반 경비 3백만 원과 함께 필요 경비로 반영하였다. 이에 일반 경비만 반영하면 냈을 세금 약 280만 원을 약 1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약 165만 원 절세)

(단위: 원)

구분	반영 전	반영 후	비고
총수입 금액	30,000,000	30,000,000	
필요 경비	3,000,000	13,000,000	A+B
일반 경비	4,000,000	3,000,000	A
광고비		10,000,000	B
소득 금액	27,000,000	17,000,000	
⋮			
총부담 세액	2,821,500	1,171,500	

(예시3) 작가(수입금액 1억 원)가 작업보조를 위해 프리랜서 작가를 고용하였으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필요 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2천만 원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면 냈을 세금 1100만 원보다 5백만 원 가량 더 많은 1700천만 원을 납부하였다.(약 534백만 원 추가 납부)

(단위: 원)

구분	반영 전	반영 후	비고
총수입 금액	100,000,000	100,000,000	
필요 경비(인건비)		30,000,000	
일반 경비	10,000,000	10,000,000	
인건비		20,000,000	
소득 금액	90,000,000	70,000,000	
⋮			
총부담 세액	17,088,500	11,748,000	

(예시4) 외주개발자(수입금액 5천만 원)가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를 일반 경비 5백만 원과 함께 반영하였다. 이에 일반 경비만 반영하면 냈을 세금 약 580만 원을 약 5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약 33만 원 절세)

(단위: 원)

구분	반영 전	반영 후	비고
총수입 금액	50,000,000	50,000,000	
필요 경비	5,000,000	7,000,000	A+B
일반 경비	5,000,000	5,000,000	A
감가상각비		2,000,000	B
소득 금액	45,000,000	43,000,000	
⋮			
총부담 세액	5,791,500	5,461,500	

(예시5) 배달원(수입금액 6천만 원)이 본인 배달에 이용되는 차량의 보험료 3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보험료를 제외한 일반 경비 2천만 원에 반영하였다.

이에 약 50만 원을 추가 납부하였다.(약 50만 원 추가 납부)

(단위: 원)

구분	반영 전	반영 후	비고
총수입 금액	60,000,000	60,000,000	
필요 경비	20,000,000	23,000,000	A+B
일반 경비	20,000,000	20,000,000	A
보험료		3,000,000	B
소득 금액	40,000,000	37,000,000	
⋮			
총부담 세액	4,966,500	4,471,500	

③ 적격 증빙 자료를 챙겨 두세요.

- 필요 경비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적격 증빙 자료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표27> 항목별 적격 증빙 자료 수취 예시

구분	내용	사례
여비교통비	업무를 위해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 업무이동을 위해 택시,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 - 해외출장을 위해 발생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
소모품비	업무를 위해 구입하는 소모품 등에 대한 경비	-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회의비	업무를 위해 회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	- 회의를 위해 준비한 커피값, 다과 - 회의장소 마련을 위한 대관비
통신비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 등	- 핸드폰 요금
기업업무 추진비	업무와 연관이 있는 특정 거래처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사를 위해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연간 1,200만 원 한도)	- 발주처와 식사한 경우의 식대 - 고객사의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의 경조사비
광고선전비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비, 마케팅 비용	- 명함구입비 - 개인 홍보를 위한 홍보주머니
외주비	자신의 용역을 위해 외주를 준 경우의 비용	- 프리랜서의 경우 디자인 외주 -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 보조요원

[3] 그것이 알고 싶다, 비용 처리 관련 Q&A



Q1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일부가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세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1 업종코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2 업종 코드는 사업소득자에게 필요 경비 및 추계신고와 연관되어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종류의 업종 코드에 해당 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28> 노무제공자 업종코드 예시

노무제공자	업종코드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보험설계사	940906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940920	기타자영업	학습지 방문강사
	940921	기타자영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630901 630904 6412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늘찬 배달업
대출모집인	940923	기타자영업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4	기타자영업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940908	기타자영업	서적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22	기타자영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922104	가전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602315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방과후학교강사	940925	기타자영업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화물차주	602307 602310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퀵서비스기사	940918	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940913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6	기타자영업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940927	기타자영업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940928	기타자영업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940914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Q3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3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경우 면세 대상 용역의 공급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하여야 합니다.



Q4 혼자 먹은 식대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4 현행 예규상 본인에 대한 중식대는 필요 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비 등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필요 경비로 해당되지 않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890(2004.07.02.), 소득 46011-643 (1996.02.27)).



Q5 외주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5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외주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지급하고 해당 원천세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 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도 똑같이 외주 용역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외주 용역비가 주된 업무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6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알고 싶다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수입금액과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홈택스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귀속연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 보기



Q7 필요 경비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나요?

A7 필요 경비는 적격증빙을 모아 비용을 집계 후 항목별로 각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명세서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취한 적격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인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알면 유용한
권리 구제 기관,
여기에 있습니다.



▣ 권리 구제 기관 목록

순번	기관명	내용
1	대한법률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법률복지기관으로서 보건의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 • 홈페이지: www.klac.or.kr • 전화: (국번없이) 132
2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 홈페이지: https://www.ftc.go.kr • 전화: (국번없이) 1670-0007
3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불공정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분쟁조정 등 지원 •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 전화번호: (국번없이) 1600-0700
4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계약서 검토, 대금체불 등 법률 상담) •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fe/ca/cnslt/NR_list.do • 전화: (국번없이) 1600-0700(내선번호 3번)
5	한국저작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저작권분쟁조정서비스, 저작권법률상담서비스, 저작권등록 서비스 등 제공,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시 보상금 기준 등 심의 •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law-counsel/index.do • 전화: (국번없이) 1800-5455
6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상담 지원 • 홈페이지: https://www.kcdrc.kr • 전화: 02-2016-4110
7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 홈페이지: https://sinmungo.kawf.kr/user/intro/artRightCommittee/list.do • 전화: 02-3668-0200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인권과 관련한 상담, 진정, 조정 업무처리 •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 전화: (국번없이) 1331

9	국민권익위원회 갑질피해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고충신고 처리, 권익구제 지원 • 홈페이지: https://www.110.go.kr/consult/affect.do • 전화 : (국번없이) 110
10	예술인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 홈페이지: http://www.kawf.kr/social/sub11.do • 전화 : 02-3668-0266
11	스포츠클럽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안내 또는 조사 •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front/counsel/online02.do • 전화: (국번없이) 1670-2876
12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홈페이지: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11508&page=011508&gubun=V2&s=moe&t=02 • 전화: 044-203-7110
13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콘텐츠 분야 기업 및 종사자 성희롱·성평등 예방교육 • 홈페이지: https://www.kocca.kr/bora/main.do • 전화: 1670-5678
14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성희롱·성폭력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합의, 권고 • 홈페이지: http://solido.kr/support/how/ • 전화: 1855-0511(내선번호 2번)
15	개인정보 분쟁조정(보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 • 홈페이지: https://www.kopico.go.kr/main/main.do# • 전화: 1833-6972
16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상담, 행정지도, 행정조사 등 수행 • 홈페이지: https://privacy.kisa.or.kr/main.do • 전화: (국번없이) 118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및 상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 홈페이지: https://www.kocsc.or.kr/ • 전화: 대표번호 02-3219-5114, 민원접수 (국번없이) 1377(유료)

18	서울노동포털 상담서비스 (서울노동권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직장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 세무상담을 제공 • 홈페이지: https://www.seoulabor.or.kr/portal/main/main.do • 전화번호: 1661-2020
19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지원 •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cust/spec/spec_pri.jsp • 전화: (국번없이) 1588-0075

- 그 밖에도 프리랜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용), ▲문화체육관광부(방송, 시각예술, 저작권 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콘텐츠분야) ▲서울시(간병인, 운동트레이너, 웹툰보조작가)등 기관에서 표준계약을 배포하였고,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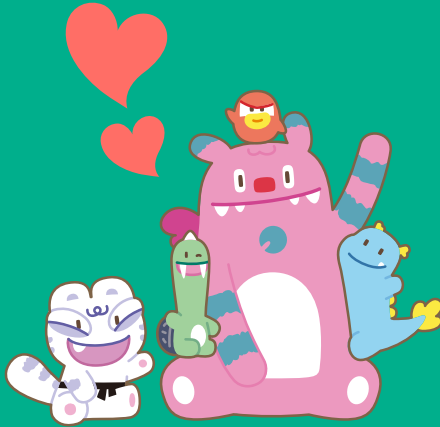
서울시가 알려주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서

“우리의 노동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

발행일 2025. 1.

발행처 서울특별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